



제1645호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1 2 0 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공 원 녹 지 과 2
- 공 고 제 2 1 2 7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문 화 관 광 과 4
- 공 고 제 2 1 3 2 호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주민 개방계획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25
- 공 고 제 2 1 3 3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8
- 공 고 제 2 1 3 6 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주적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공 원 녹 지 과 31
- 공 고 제 2 1 3 7 호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34
- 공 고 제 2 1 3 8 호 제21회 소래포구 비대면축제 어린이그림 공모전 기한 연장 안내 문 화 관 광 과 37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42

고 시

- 고 시 제 1 8 0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43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120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공원 면적 변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면적(㎡)	시설율(%)	
변경	석촌 공원	근린 공원	간석동 산15-1 일원	53,691	5,245	9.77	52,944	5,960	11.26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석촌 공원	- 부지면적 변경 - 기 정 : 53,691m² - 변 경 : 52,944m² - 시설을 변경 - 기 정 : 9.77% - 변 경 : 11.26%	- 주민 요구사항 발생에 따라 주민 이용을 높은 기존 화장실 존치 및 숲속놀이터 신설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 석촌근린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부지(m ²)	구성비(%)	부지(m ²)	구성비(%)	
총 계	53,691.0	100.00	52,944.0	100.00%	부지면적변경 감 747m ²
기반시설	1,460.0	2.72	1,690.0	3.19	증) 230.0m ²
도 로	1,108.0	2.06	918.0	1.73	감) 190.0m ²
광 장	352.0	0.66	772.0	1.46	증) 420.0m ²
조경시설	-		-		
휴양시설	465.0	0.87	465.0	0.88	
유희시설	-		884.0	1.67	증) 884.0m ²
운동시설	1,026.0	1.91	1,026.0	1.94	
교양시설	-		-		
편익시설	2,294.0	4.27	1,835.0	3.47	감) 459.0m ²
관리시설	-		60.0	0.11	증) 60.0m ²
녹지 및 기타	48,446.0	90.23	46,984.0	88.74	감) 1,462.0m ²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629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1-2127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남 동 구 청 장**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안」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규정을 이용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결과공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사용변경 허가 신청 요건 완화(안 제9조)
-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결정기준 마련(안 제11조)
- 사용료에 대한 계약금 납부 금액 하향 조정(안 제12조)
- 사용료 반환 신청 제한사항 완화(안 제14조)
- 관람료 할인 대상자 확대(안 제21조)
- 수강료 할인 대상자 확대(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33 FAX 453-21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안」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제4호 중 “정기대관”을 “대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

의안건,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대관”을 “대관”으로, “사용신청 일자가”를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제2호와 같이 사용신청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되,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관”을 “아트홀”로, “주최하는”을 “주최하거나 지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연·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을 “사용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대관 공고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퍼센트를”을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이 경우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기타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반환 시에도 적용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

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할인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회원제(유료) 가입자

2. 단체관람제 운영 및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대관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2. 신년 및 송년 행사 및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 등 제26조의 제목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감면)” 을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 대상자에게는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를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트홀에서 주관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에 대한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며”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대관공고에 따른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u>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4. 정기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5. (생략)

제6조(회의 등) ① (생략)

<신설>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임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대관 -----

5.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용허가라 함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말하며, 정기대관은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

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내로 실시
할 수 있으며-----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
기준)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정
기대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다.

1. 회관 기획공연·전시, 남동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
단”이라 한다) 공연,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전시, 단
체공연·전시, 개인공연·전
시 순

2. 단체간·개인간 경합된 경우
에는 공연·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 순

② (생략)

③ 수시대관의 경우 선착순에
의한다.

제12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계
약금 명목으로 50퍼센트를 납부
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

--- 7일 -----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
기준) ① ----- 대관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
하며, 제2호와 같이 사용신청이
--- 위원회-----
--.

1. 아트홀 -----

--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

2. -----
-- 사용신청일 기준 가장 최
근의 대관 공고에서 정한 심
사기준에 따른 고득점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사용료) ① -----
----- 전
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

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략)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안될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시대관 또는 부속시설 대관에 대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이 경우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

③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21조(관람료)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할인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의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할인을 50% 이내)

나. 정기회원제 운영, 단체관람제 운영 및 이벤트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을 50%이내)

2. 면제대상은 별표와 같다.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은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기타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반환시에도 적용한다.

제21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할인 할 수 있다.

1. 정기회원제(유료) 가입자

2. 단체관람제 운영 및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

료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대관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를 받는 사람(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제26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 대상자에게는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2. 신년 및 송년 행사 및 지역발전 등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 등

제26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할인)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트홀에서 주관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에 대

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 호자 1
 명 포함)

3. 국가유공자(다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에 해당하는 자는 활동보조자
 1명 포함)와 그 배우자, 국가
 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4. 만 65세 이상 어르신

5.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이 1급 또는 2급일 경우에는
 활동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다만, 선순
 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
 우자 및 자녀

한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할인
 하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소래아트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허 가 조 건

(뒷면계속)

-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4일 내에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7조, 규칙 제9조, 규칙 제12조)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9조)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조례 제10조)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해당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규칙 제14조)
- 남동구청장은 천재지변 및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 제8조)
 - 종교행사, 정치관련 행사, 상품판매 행사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목적, 허가조건 위반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 시설·설비관리 및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본 아트홀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3조 및 제19호)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본 아트홀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아트홀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법규 : 조례 제11조, 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7조)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스텝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귀 아트홀의 허가조건 및 아트홀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성명 :

(서명)

아트홀 사용시 유의사항

행사 및 공연을 하기 위해 남동구소래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시설 유지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행사 및 공연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공연장 안에서는 음료수, 커피, 물 등을 마시거나 식사 등은 절대 불가하며, 화환, 꽃다발,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행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행사 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시고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해 나가야 합니다.
3. 행사시 도난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아트홀이 책임지지 않사오니 귀중품은 주최 측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4. 주최자는 행사 및 공연시작 전 반드시 위의 1, 2, 3항을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아트홀 내 부착할 광고물(현수막, 현판 등)은 아트홀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현수막 게첩은 각 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수막은 광장 현수막 게시대(6m×0.9m), 대공연장 바텐 (14m×1m이내), 소강당 현수막 게시대(9m×0.6m)에 일정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광고물은 아트홀 내 부착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16조)
6. 각종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현수막은 남동구청 도시경관과에서 필히 검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불법게시로 적발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합니다. 또한, 공연 및 행사 후에는 반드시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7. 아트홀의 시설과 공연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생활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므로 개최하는 행사 및 공연 내용이 본래의 대관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시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아트홀대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소래아트홀
(☎ 032-453-5190 / Fax 032-453-5189)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자료]

□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안(국민권익위원회)

* 별도자료 첨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132호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주민 개방계획 행정예고

학교 인근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남동구 최초로 시행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간석초등학교와 상인천중학교 부설(공유)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함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주민 개방계획』
2. 행정예고 및 추진목적 : 학교 인근 주차난 최소화를 위해 시행될 간석초등학교와 상인천중학교의 부설(공유)주차장 주민 개방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개방계획

학 교 명	위 치	주차면수	운영 시행 예정
간석초등학교	남동구 구월동 6-1번지	21	2021. 12.
상인천중학교	남동구 간석동 11-1번지	29	2021. 12.

- 개 방 시 간 : 평일야간(18:00~익일 07:30) 및 주말·공휴일(24시간)
- 주민개방방법 : 남동구청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 유료 사용
(※ 주민개방시간 외 시간은 학교 임직원 및 학부모 사용)

4. 주차요금

- 유료화 운영 : 월정기 10,000원 (6개월 단위)

5. 회원 모집계획

- 회원제 운영(무인화 운영) : 2021. 12월부터 (11월중 최초모집 예정)

○ 월정기권 운영(간석초등학교 21면 / 상인천중학교 29면)

○ 모집 및 이용기간

· 정기모집 : 상반기(1월), 하반기(7월)

[※ 2021. 12월 ~ 2022. 1월까지 2개월 운영하되, 2022. 2월부터는 6개월 단위 운영]

· 이용기간 : 6개월[(2월~7월)/(8월~1월)]

· 모집방법 :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현장 홍보(현수막 등)을 통한 회원 모집

[※ 회원제 운영(이름, 연락처 등이용자 정보 학교제공 및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이용제한)]

[※ 개방시간 등 회원모집 시 공고될 공유주차장 이용자 준수규칙 미준수 시 이용제한 및 차량 견인조치 예정]

6.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7.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11. 08. ~ 2021. 11. 29.(21일간)

9. 의견제출

○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주민 개방계획』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1. 11. 08. ~ 2021. 11. 29.(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3 / FAX : 032)453-288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장 주민 공유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학교 부설주차장 주민 공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133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11.8. ~ 2021.11.23.**

3. 공고대상 : **이륜차 4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54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9.7. ○ 견인일 : 2021.10.1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역남로 16번길 20
	2021-0057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9.16. ○ 견인일 : 2021.10. 1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경인로 644번길 간석오거리역1번출구 근처
	2021-0058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9.16. ○ 견인일 : 2021.10.1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경인로 644번길 간석오거리역1번출구 근처
	2021-006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0. 5. ○ 견인일 : 2021.1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542-10 남동빌라 A동 앞 차도 위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1-0054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남로 16번길 20	2021.10.19.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1-0057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경인로 644번길 간석오거리역1번출구 근처	2021.10.19.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1-0058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경인로 644번길 간석오거리역1번출구 근처	2021.10.19.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1-006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문화로 115번길 52	2021.11.3.	(주)인천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136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주적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주적체육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주적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		면적(㎡)	시설율 (%)	
변경	주적 공원	체육 공원	도림동 412 일원	35,750	17,006	47.56	42,388	19,209	45.32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주적 공원	- 부지면적 - 기 정 : 35,750m² - 변 경 : 42,388m² - 시설을 변경 - 기 정 : 47.56% - 변 경 : 45.32%	인천남동 도철산단 GB 훼손지복구계획에 따른 주적체육공원 확대결정으로 다양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 주적체육공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합 계			35,750.0	17,006.0	2	572.2	360.6	38	42,388.0	19,209.0	3	752.2	540.6	38	부지면적변경 증 6,638㎡			
공 원 시 설	계		17,006.0	17,006.0	2	572.2	360.6	38	19,209.0	19,209.0	3	752.2	540.6	38	증) 2,203㎡			
	기 반 시 설	소 계	883.0	883.0	-	-	-	-	1,249.3	1,249.3	-	-	-	-	증) 366.3㎡			
		도 로	604.7	604.7	-	-	-	-	971.0	971.0	-	-	-	-	증) 366.3㎡			
		광 장	278.3	278.3	-	-	-	-	278.3	278.3	-	-	-	-	-			
	조경시설		-	-	-	-	-	-	-	-	-	-	-	-	-			
	휴양시설		133.5	133.5	-	-	-	32	133.5	133.5	-	-	-	32	-			
	유희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14,215.0	14,215.0	1	445.2	233.6	6	15,839.0	15,839.0	1	625.2	413.6	6	증) 1,624.0㎡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1,774.5	1,774.5	1	127.0	127.0	-	1,987.2	1,987.2	1	127.0	127.0	-	증) 212.7㎡			
	관리시설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8,744.0	-	-	-	-	-	23,179.0	-	-	-	-	-	증) 4,435.0㎡		
시설율(%) (법정 50%이하.)			(17,006㎡ ÷ 35,750㎡) × 100 = 47.56%						(19,209.0㎡ ÷ 42,388㎡) × 100 = 45.32%									
건폐율(%) (법정 15%이하)			건축면적		572.2㎡			건축면적		752.2㎡			(572.2㎡ ÷ 35,750㎡) × 100 = 1.6%			(752.2㎡ ÷ 42,388㎡) × 100 = 1.8%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6291)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137호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동구 최초로 시행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간석초등학교와 상인천중학교 부설(공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9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개방사업
2. 시 행 자 : 남동구청장
3. 공고기간 : 2021.11.09. ~ 2021.11.29. (21일간)
4. 의견제출 : 2021.11.09. ~ 2021.11.29. (21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 남동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다.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라.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7. 설치장소

연 번	학 교 명	주 소	장 소	비 고
-----	-------	-----	-----	-----

				(주차면수)
1	간석초등학교	구월동 6-1번지	부설(공유)주차장 내	21면
2	상인천중학교	간석동 11-1번지		29면

8.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

9. 촬영범위 및 시간 :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내 24시간 촬영

10. 운영관리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관리)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나. 제출기간 : 2021.11.29일까지 (21일간)

다.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우편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팩스 : 032)453-288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12. 문의사항 : 남동구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 ☎032)453-2683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개방사업 관련 공유주차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학교 부설(공유)주차장 개방사업 관련 공유주차장 내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CCTV 구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138호

제21회 소래포구 비대면 축제 「소래포구 어린이 그림 공모전」

제21회 소래포구 비대면 축제개최를 기념하여 남동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재능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위해 접수기한을 연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공모 요강

- 공 모 명: 제21회 소래포구 비대면 축제 - 소래포구 어린이 그림 공모전
- 응모자격: 남동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
 - 저학년부: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 고학년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 그림주제: '소래포구'
 - 소래포구 어시장이나 주변 관광지 등을 소재로 소래포구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자유롭게 표현
- 공모기간 (당초) 2021.10.22.(금) ~ 11.08.(월) (학교별 접수)
(연장) 2021.11.09.(화) ~ 11.30.(화) (직접 접수)
- 공모방법: 남동구청 문화관광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작품규격: 8절 도화지, 자유소재 (1인당 1작품)
(뒷면에 참가자 성명, 학교, 학년, 연락처 기재 필수)
 - 제출방법: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를 응모작품과 함께 동봉하여 기한내 접수

- 제 출 처: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소래포구축제 담당자 앞

※ 응모기간 종료일 도착분까지 접수 완료하며 추후 접수확인문자 발송

2. 시상

○ 시상내역: 상장 및 부상

구분	상장 훈격	저학년부	고학년부	부상
금상	남동구청장상	1명	1명	상장 외 부상은 수여하지 않음
은상	남동구청장상	2명	2명	
동상	남동구청장상	3명	3명	
입선	남동구청장상	학교별 1점	학교별 1점	

※ 입선작 중 금,은,동상 선정

- 심 사 : 2021.12.02.(목) / 미술분야 전문가 심사
- 입상작 발표 및 전시(금·은·동상) : 2021.12.06.(월)
/ 소래포구축제 공식블로그 및 개별 통지
- 입상자 시상 : 2021.12.10.(금) (예정)
/ 금은동상 : 구청장 친수 / 장려상 : 개별 우편 발송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3. 수상작 활용

○ 수상작 전시 등 활용

- 수상작은 공모전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남동구청이
축제 블로그 전시 등에 활용
- 소래포구 비대면 축제 종료 후 소래포구 공공목적 사업 추진에 활용

4. 제출 시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드시 참가자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타 공모전에서 이미 수상한 작품이거나 타인의 작품 명의 도용·표절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입상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작품 수상 취소 및 상장을 환수합니다.
- 남동구청이 응모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함께 가지며,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작품을 온라인·오프라인 복제 및 전송, 제2차 저작물로 가공·변형하여 출판, 전시,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유의사항 및 공고문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5. 문의: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032-453-2142

붙임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제21회 소래포구 비대면 축제 「소래포구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신청서

응모자	학교	_____초등학교 _____학년		
	응모 부문	저학년부() / 고학년부()		
	성 명		연락처	
	그림 제목			
	그림 설명			
	주소			
법정 대리인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공모전 등록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본인 및 보호자 확인과 관련 정보 안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학교, 학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운영관리 등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며, (이용·보유기간 3년)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응모 등록 및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및 배포 활용 동의

1. 공모 당선작의 지적재산권은 남동구에 귀속되며, 남동구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동구는 공모 당선작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홍보 등 공적인 용도로 제작, 복제,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및 배포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공모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제21회 소래포구 비대면축제 - 소래포구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내용을 모두 숙지했으며, 제반 사항에 동의합니다.
2. 출품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책임은 모두 응모자(출품자)에게 있습니다.
3. 당선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남동구에 양도되며, 당선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서 및 서약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공모전 서약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미성년자와의 관계 :
 법정대리인 연락처 :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10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 11. 22.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 11. 5. ~ 2021. 11. 19.(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0 -0200177	잔스비프(Joh n's Beef)	양*찬	논현남로10번길 4, 1층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 11. 3.	2021. 11. 2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 11. 19.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11월 5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7번길 16 (만수동)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13 (남촌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5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13 (남촌동)	2021.1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17번길 18-1 (만수동)	2021.11.5.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17번길 20 (만수동)	2021.11.5.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7번길 16 (만수동)	2009.11.16.	만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1.5.	건물 등의 주된 만부로7번길 16 기초구간에위치하여16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72 (수산동)	2011.3.24.	배가 달았다는 옛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21.11.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배려터로 72 기초구간에위치하여72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3-9, 6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26번길 16 (간석동)	2009.11.16.	풀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1.5.	건물 등의 주된 풀무로26번길 16 기초구간에위치하여16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48 (남촌동)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1.5.	건물 등의 주된 남동서로316번길 48 기초구간에위치하여48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63-6 (구월동)	2009.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1.5.	건물 등의 주된 용천로4번길 63-6 기초구간에위치하여63-6을건물번호로부여	